

고 발 장

1. 고발인

시민단체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익지킴이센터를 대리하여

시민활동가 : 이희범, 전민정

변호사 : 강연재

2. 피고발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소속 공무원들로서 광화문 광장 불법조형물 철거 민원 접수하여 처리할 의무가 있는 한창욱 팀장, 김주현 주무관, 박상운 주무관 등 광화문광장 관리팀 관계직원

3. 고발 취지

고발인들은 민원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피고발인들이 부당하게 민원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에,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피고발인들이 민원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혐의 사실에 대하여

- 피고발인들은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인 자들입니다.
- 고발인은 2019년 12월 16일 (월) 서울시 민원전화 다산콜을 통해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불법조형물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 2019년 12월 17일 (화)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에서 처리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2019년 12월 18일 (수) 재생정책과 김주현 주무관과 통화하여 신속한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계고서를 보내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주현 주무관에 의하면, 최종결정 담당자는 한창옥 팀장으로 확인했습니다. (통화: 오전 11:29)
- 2019년 12월 20일 (금) 재생정책과에 계속 전화하였으나, 담당 한창옥 팀장, 김주현 주무관은 연가라는 답변을 들었고, 전화상 확인 결과, 20일 까지 3차에 걸쳐 계고서를 불법조형물 설치한 단체에 보냈기 때문에, 영장만 청구해서 영장대집행하면 되는데, 담당자들이 연가라서 월요일에 처리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주말 동안 방치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항의하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 앱으로 다시 철거 민원을 넣었습니다.
- 2019년 12월 23일 (월) 오전에 재생정책과 한창옥 팀장과 통화하여 영장대집행을 요구했으나, 내부적 사정이 있고 지게차가 필요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철거가 쉽지 않으니 기다려달라며 최대한 빨리 치우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2019년 12월 24일 (화) 박상운 주무관과 통화하였는데, 한창옥 팀장, 김주현 주무관은 또 다시 연가를 갔다고 하며, 강제철거가 쉽지 않다고 말하며, 영장대집행은 검토중이고 자진철거가 원칙이라 담당자와 계속 통화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원인은 영장대집행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미루기만 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박상운 주무관은 언제까지 영장집행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없으니 고발하라고 답변했습니다.
- 2019년 12월 27일 (금) 영장대집행을 미루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3차 민원을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시장실로 민원을 서류로 접수하였습니다.
- 피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등이 정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민원처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당연히 처리해야할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피고발인은 국가법령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입니다.

5. 고발 이유

○ 적용법조문

1.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2.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6.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동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유기

1.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불법조형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인 피고발인들은 불법조형물을 설치한 자들을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고발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설사 모욕죄가 친고죄라고 할지라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요한다는 것이지 범죄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의 방지와 중단을 위해서 고발조치를 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민원인은 모욕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불법조형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고발을 하더라도 피해자(전두환)의 고소가 없는 한 고발효과가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고발권이 없습니다.

2. 민원인은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부터 서울시에 불법조형물을 제거하도록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까지도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전직 대통령의 동상 목에 밧줄을 묶어 뒷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린채 쇠사슬로 묶어 동물우리 같은 철창에 가두어 공개된 장소에 두고 잔인하게 폭행 등을 하는 장면을 시민들과 청소년, 외국인들에게 노출시키는 사태가 2주 넘게 진행되고 있도록 뒷집지고 있는 관련 공무원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구속수감된 수용자라고 할지라도 교도관이 쇠사슬을 목에 감거나 밧줄질하지 않습니다. 비록 조형물이라고 할지라도 특정인에대한 모욕은 법익침해에 해당합니다. 조형물 실체가 있고 다중이 모여드는 서울도심 한복판에 설치되어 이미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다는 점에서 SNS 상 모욕보다 법익침해가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제거조치하지 아니하고 10일 이상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두환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고 모욕이며, 불법조형물을 설치한 특정세력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좌우 시민들간에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조형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의 반발이 우려되어 공무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불법조형물을 전시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제거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형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형량은 대상이 적법할 때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치를 봐야할 공무원들이 범법행위자들의 눈치를 보며 철거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이 사실이라면 이 자들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3. 지금까지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나 사유가 있다면 모를까 그러한 사정이나 사유는 보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 어떠한 장애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은 고발인에게 그에 관한 어떠한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의 알권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고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고발조치하여야 할 고발사건임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의혹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태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에서인지, 부당한 이유에서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하나인데, 서울시 공무원만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우파유죄 좌파무죄'가 정말 작용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4. 이에 고발인들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법상식을 믿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서울시청의 민원제기에 대한 처리 행태와 관련하여 과연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형법 제122조가 규정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그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수사요청과 함께 이 건 형사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범죄는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지 공개된 장소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전두환 동상을 설치한 당사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죄할 때까지 광장에 조형물을 놓고 사적인 보복을 가할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적인 보복은 공산주의국가에서 인민재판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법위에 균림하는 사적인 보복은 법치국가에서는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전두환 동상은 일반 불법 시설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이 가미된 조형물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사례를 방치하거나 유기한다면 앞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적인 보복이 횡행하여 질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은 신속히 조치하여 경각심을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6. 증거자료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 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고발인 이희범 (인) 강연재 (인) 전민정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 증거자료(서류) 세부 목록

순번	증거	작성자	작성일
1	'포승줄에 묶여 무릎꿇은 전두환 조형물'이 광화문 광장에 놓인 이유	민중의소리	2019.12.12
2	[영상]전두환 조형물 못매... "참회하라""사형시켜야"	오마이뉴스	2019.12.12
3	'시민들에게 맞는 전두환 조형물'	뉴시스	2019.12.12
4	5.18단체 '쇠창살 갇힌 전두환 조형물' 광화문에 설치	동아일보	2019.12.13
5	[경향포토]광화문에서 무릎꿇은 전두환 전 대통령 조형물	경향신문	2019.12.12
6	전두환, 호화식사로 '12.12쿠데타' 자축... 광화문에는 무릎 꿇은 수형자 전두환 동상	한국연예스포츠신문	2019.12.13
7	전두환 전 대통령 조형물에 발길질하는 시민단체	뉴스1	2019.12.12
8	전두환, '12.12' 40년만에 광장에서 '구속'되다	한국일보	2019.12.12
9	'12.12사태 40년' 광화문에 무릎꿇은 수형자 전두환 동상	연합뉴스	2019.12.12
10	서울 광화문 광장에 등장한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	중앙일보	2019.12.12
11	'12.12사태 40년' 무릎꿇은 전두환 광화문에 등장	세계일보	2019.12.12
12	전두환 무릎꿇린 날, '1212사태' 자축 오찬에선 "각하"	이데일리	2019.12.13
13	시민들 분노에 2주만에 박살난 '전두환 동상'	내외신통신	2019.12.27
14	"시민들 분노가 동상을 깨뜨렸다" 2주 만에 박살 난 '전두환 동상'	한국일보	2019.12.27
15	"당분간 때리지 마세요"...2주 만에 머리 깨진 '전두환 동상'	이데일리	2019.12.29
16	'전두환에 분노'	뉴시스	2019.12.12
17	불법조형물 최근 사진	고발인	2019.12.27
18	제3차 불법조형물 철거 민원서	고발인	2019.12.27